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7. 4. 21. 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덕환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기부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윤 흥 창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7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17년 4월 13일

3. 제정이유

○ 이 조례는 교육기부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 확보와 활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과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.

4. 주요내용

- 교육기부 진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교육기부 진흥 추진계획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교육기부 진흥 사업(안 제5조)
- 교육기부 협약 체결 및 취소(안 제6조, 안 제7조)
- 교육기부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교육기부에 대한 인식 확산과 다양한 교육자원 확보를 통하여 유치원과 초·중등학교 교육활동에서의 교육적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.
-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서, 교육차원에서도 학교의 창의·인성, 현장체험 교육이나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교육자원으로 교육기부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.
- 교육부는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부 기관 발굴, 교육기부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온라인 매칭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유학기제, 방과후 교육활동 등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기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.
-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볼 때, 교육기부에 대한 우리 지역사회의 인식과 공감대를 확대하고 교육기부 문화 형성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과 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,
-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부 진흥 계획의 매년 수립과 세부 추진 사업을 명시 하는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기부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